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6. 26.>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1)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나. 청소종사자 2명 이상
2. 시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 것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나. 운반차량: 1대 이상 다.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cm² 이상): 1대 이상 라.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마. 환기기구(200m³/hr): 1대 이상 바.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사.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아.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5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만 해당한다) 자. 누전차단기: 1대 이상